

| | |
|-----------|----------------|
| 의안번호 | 제 699 호 |
| 의결 연월일 | . . . (제 회) |

충청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

| | |
|-------|--------------|
| 발의자 | 이상정 의원 등 7인 |
| 발의연월일 | 2021년 4월 13일 |

충청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

(이상정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699 |
|----------|-----|

발의연월일 : 2021년 4월 13일
발 의 자 : 이상정, 연종석, 송미애
윤남진, 이상식, 박형용
이숙애

1. 제안이유

-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 농수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먹거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실행체계로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6조)
-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조)
- 충청북도 먹거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8조~제13조)

3. 조례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조례안예고 : 2021. 4. 5 . ~ 2021. 4. 12. (7일)
- 관련부서 협의 : 농정국 농식품유통과와 협의함
- 비용추계 : 붙임

충청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 농수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 먹거리”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도내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3.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공급되고 소비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에게 지역 먹거리를 우선 공급하는 등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역 먹거리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먹거리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먹거리 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 먹거리 정책의 목표 및 실행 계획
3. 지역 먹거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조달 방안
4. 지역 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 운영 계획
5. 취약계층, 어린이·학생,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영양학적 관리가 필요한 도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먹거리 계획 실행 및 평가)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정책의 추진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 먹거리 이용 실태 등을 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준 등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실행체계로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가 실행하는 지역 먹거리 관련 정책은 종합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법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먹거리위원회) ① 도지사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충청북도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종합계획의 실행 및 평가
3.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지사

2.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 먹거리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

2. 도 교육청 먹거리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지역 먹거리 또는 먹거리 기본권 관련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역 먹거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생산·가공·유통·소비·교육·환경 등 분야의 전문가를 고르게 위촉하여야 한다.

⑤ 제2항제1호, 제3항제1호 및 제2호와 제3항제3호가목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제3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개최 성격에 따라 정기회,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공동위원장 중 1명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 ③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공동운영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동운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2. 제9조제3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이 된다.

④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호선으로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둔다.

⑤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먹거리 관련 업무 팀장 또는 먹거리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도 먹거리 기본권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존속기한) 제9조에 따른 위원회는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시행 2020. 12. 8] [법률 제17618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유지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 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등을 육성하여야 한다.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농산물직거래법)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276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종합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 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및 농산물 직거래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실적 등을 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평가 반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 추진사항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충청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지역 농수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 공공(학교)급식 확대 및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의 실행수단으로써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운영 지원
-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를 위한 민관 협의체인 충북 먹거리위원회 구성·운영

2. 비용 발생 요인

- 광역(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비용 발생
- 충북 먹거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

3. 관련조문

- 안 제6조(먹거리 계획 실행 및 평가)
 - 도지사는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실행체계로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
- 안 제11조(위원회 운영)
 -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비용 추계결과

가. 재정수반 요인

- 광역(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및 충북 먹거리위원회 운영

나. 추계의 전제

-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 1개소 / 150억원
-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 8개소(‘20~’25)/160억원 *개소당 20억원
- 충북 먹거리위원회 운영 : 25백만원/년
 - 참석수당 : 민간위원 28명 × 5회 × 100천원 = 14백만원
 - 워크숍 개최 : 1회 × 6,000천원 = 6백만원
 - 기타 수용비 : 5백만원

다. 추계결과

- 추계기간 : ‘22~’25년까지 총 4년간
- 소요금액 : 282억원(균특 215, 도비 1, 시군비 66)

라. 재원조달 방안

-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 균특 100%
-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 균특 50%, 시군비 50%
- 충북 먹거리위원회 운영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계 | 기 투자 (2020년) | 기 확보 (2021년) | 1차년도 (2022년) | 2차년도 (2023년) | 3차년도 (2024년) | 4차년도 (2025년) |
|-----------------------|--------|-----------------|-----------------|-----------------|-----------------|-----------------|-----------------|
| 세 출 | 31,135 | 946 | 2,019 | 3,255 | 11,225 | 11,525 | 2,165 |
|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1개소) | 15,000 | - | - | 300 | 7,200 | 7,500 | - |
|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8개소) | 16,000 | 930 | 2,000 | 2,930 | 4,000 | 4,000 | 2,140 |
| 충북 먹거리위원회 운영 | 135 | 16 | 19 | 25 | 25 | 25 | 25 |